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일몰제'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일몰제 적용 신설 (안 제2조의2)

나. 위원회 제명 변경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및 보완 (안 제6조)

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입법예고 : 2014. 12. 05. ~ 12. 26.(20일)

4)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해촉, 제척 등에 관한 개선의견이 있어 안 제6조, 안 제6조2, 안 제6조3에 반영함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복식부기지출팀장"을 **"지출업무 소관팀장"**으로 한다.

제6조 제명을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액의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1. 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중소기업체, 금융기관, 민간경제단체 등의 종사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 위원은 위촉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⑨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 중 최초로 위촉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2년이 경과된 위원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심사 이후도 포함)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 3. (생　략)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복식부기 지출팀장 ③ ~ ⑤ (생　략)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지출업무 소관 팀장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액의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

	에 부치는 사항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3명, 구청간부 3명, 기금위탁관리은행 지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사람 2명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재정국장이 된다.	<신 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1. 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중소기업체, 금융기관, 민간경제단체 등의 종사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신 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 설>	⑨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 위원은 위촉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의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6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기금운영에 있어 일몰제를 적용과 위원회 구성의 성별·민간전문가 비율을 신설하고 위원의 제척 및 해촉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일몰제 적용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위원회 성별 균형참여 비율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상기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사항은 없음

4.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행정7급 이정언(330-1914)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